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678호
2009년 1월 28일 수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6 호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고시 2
- 인천광역시서구공시 제2009-7 호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1호 공시송달공고 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8호 도시계획시설 [공원:원신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에 관한 공고 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6호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관내 재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지적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개 요

1.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디지털시범측량지역 38점
- 측량연월일 : 2008년11월 21일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

■ 열람안내

- 지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계양좌표	X	Y		세계측지계	X	Y
교6177	-3990.471	-4345.264		교6177	446458.859	170427.167
교6180	-3999.232	-4122.232		교6180	446449.510	170650.173
교6183	-4110.702	-4126.301		교6183	446338.052	170645.811
교6185	-4101.680	-4274.419		교6185	446347.464	170497.717
교6178	-3992.053	-4275.018		교6178	446457.092	170497.408
교6191	-4233.946	-4282.012		교6191	446215.220	170489.775
교6187	-4098.014	-4347.074		교6187	446351.322	170425.072
교6162	-3919.221	-4052.566		교6162	446529.336	170720.047
교6169	-4312.296	-4137.201		교6169	446136.492	170634.379
교6173	-4260.854	-4484.578		교6173	446188.850	170287.143
교6174	-3987.146	-4478.225		교6174	446462.535	170294.216
교6161	-3916.283	-4118.776		교6161	446532.449	170653.848
교6167	-4189.807	-4131.868		교6167	446258.962	170640.034
교6168	-4240.391	-4131.492		교6168	446208.379	170640.277
교6158	-3906.552	-4340.965		교6158	446542.765	170431.687
교6157	-3919.121	-4395.563		교6157	446530.339	170377.057
6159	-3925.518	-4287.382		6159	446523.658	170485.220
6160	-3912.296	-4229.964		6160	446536.729	170542.672
6163	-4013.136	-4058.293		6163	446435.438	170714.073
6164	-4062.594	-4060.435		6164	446385.986	170711.801
6165	-4108.209	-4063.325		6165	446340.379	170708.791
6166	-4194.041	-4066.065		6166	446254.555	170705.825
6170	-4365.584	-4058.622		6170	446083.000	170712.816
6171	-4302.840	-4359.979		6171	446146.536	170411.629
6172	-4299.397	-4434.227		6172	446150.175	170337.391
6175	-3918.393	-4476.167		6175	446531.280	170296.456
6176	-3990.315	-4424.255		6176	446459.224	170348.177
6181	-3971.920	-4117.770		6181	446476.810	170654.707
6179	-3995.787	-4233.960		6179	446453.250	170538.456
6182	-4057.390	-4124.646		6182	446391.360	170647.606
6188	-4034.877	-4344.162		6188	446414.450	170428.152
6189	-4169.177	-4350.412		6189	446280.168	170421.546
6190	-4230.602	-4357.249		6190	446218.763	170414.547
6184	-4105.530	-4196.653		6184	446343.409	170575.472
6186	-4068.140	-4272.935		6186	446381.000	170499.290
6193	-4231.711	-4257.072		6193	446217.389	170514.721
6194	-4239.221	-4202.628		6194	446209.736	170569.145
6192	-4158.926	-4276.643		6192	446290.225	170495.342

인천광역시서구공시 제2009-7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9년 1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용 비용	비고
○ A4용지(1매당) : 62원 ○ A4라벨용지(1매당) : 190원	○ CD제공 = (500원×CD개수)+(25원×면수)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1. 21 ~ 2009. 2. 4 (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업종	교부번호	영업자명	업소명	소재지 주소	청문사유 (위반사항)	예정된 행정처분
세탁업	신현007	김덕임	청명세탁소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3-7	영업시설물 멸실	영업소폐쇄
“	신현003	심용우	대구사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5-7	“	“
“	연희008	홍남숙	크린랜드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36-4	“	“
“	검단-40	김희곤	풍림세탁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9-1	“	“
“	석남1-004	손도현	백합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81-11	“	“
“	검암-13	박종선	슈즈쿨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08-1 장은프라자 120호	“	“
“	가좌4-004	한덕재	백양세탁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2-11	“	“
“	가정3-009	정성임	성민세탁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5-2	“	“

4. 공고장소 : 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www.seo.incheon.kr)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032-560-4382)

6.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청공고 제2009-118호

도시계획시설 [공원:원신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입안에 관한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34-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원신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입안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원조성계획 입안 내용

□ 공원 개요

- 명 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원신근린공원)
- 시설의 종류 : 도시공원(근린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34-1번지 일원
- 면 적 : 176,187㎡
- 시설결정 : 1966. 8. 31(건교부 고시 제2701호)

□ 입안사유

-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공간 조성
- 여가공간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 및 도시의 기능과 미관의 향상
- 주변이용자들의 여가활동과 휴양, 모임 등의 활동 공간 제공

□ 조성계획 입안(안)

○ 원신근린공원

구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 토 결 과
공원면적	176,187			
시설면적	70,474.8	45,130	25.61	법규 가능범위내 계획(법정 40%이하)
건 폐 율	17,618.7	5,732.8	3.25	법규 가능범위내 계획(법정 10%이하)

○ 주요도입시설 : 청소년수련관, 게이트볼장, 잔디광장, 폭포, 테니스장, 어린이놀이터 등

※ 공원조성계획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560-4800)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09-1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기존 「하수도법」에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오수·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분뇨의 적정처리
- 청소이행 통지 및 기간의 연장
- 분뇨수집·운반의 대행
-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에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02.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지(서구청 청소행정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번지)
- 전화번호 : 032-560-4423
- FAX : 032-560-439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호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사무소 및 차고지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해당 월의 이행실적을 다음 달 10일 전까지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및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제6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제9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재래식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기존 「하수도법」에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이행 통지 및 기간의 연장
- 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 수수료 지원 신청 등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에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02.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지(서구청 청소행정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번지)
- 전화번호 : 032-560-4423
- FAX : 032-560-4399

규	칙
---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일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소이행 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1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휴·폐업의 경우
2. 건물 전체가 사용 중지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4조(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등)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

라 영수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나머지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③ 청소실적 보고는 제1항의 청소일지 사본의 제출로 갈음한다.

제5조(수수료의 지원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확인은 주소지 관할 동장이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 청결의 준수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에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02.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지(서구청 청소행정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번지)
- 전화번호 : 032-560-4423
- FAX : 032-560-4399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 등에서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계류 중인 가축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 또는 가축 3마리 이하의 소·말과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개·양·돼지·닭·오리·거위 등
5. 가정의 방법·애완용 동물 및 소수의 조류

제5조(청결의 준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주위 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축사 안팎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동 명 (법 정 동)	제 한 구 역
전부제한지역	신현동 석남동 가좌동	전 지 역